

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(안)

| | | |
|--------|--------|--|
| 의 번 | 안 호 | |
|--------|--------|--|

제출년월일 : 94. 11.

제 출 자 : 운영위원장

1. 제 안 이 유

- 의원이 의회에서 행하는 발언은 의제에 국한해서만 허용되고 있고 의제밖의 발언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발언제도를 도입해서 의제외의 사안이라도 도민이나 의원의 중요관심사항에 관해서는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임

2. 주 요 골 자

- “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개의회로부터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안건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5분이내의 발언을 허가 할 수 있다” 는 안 신설 (안 제 37조의 2 ①항)
- 5분자유발언은 사안에 관한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다 (안 제 37조의 2 ②항)
-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개회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요지를 간략히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 (안제37조의 2 ③항)
- 5분자유발언의 발언순서는 접수부에 등재된 순서에 의한다. (안 제37조의 2 ④항)

충청북도의회회의 규칙중 개정규칙(안)

충청북도의회회의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7조의 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7조의 2(5분 자유발언)①의장은 본회의가 개최되는 경우 그개의시로부터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이내의 발언 (이하 “5분 자유발언”이라 한다)을 허가 할 수 있다.

②5분자유발언은 사안에 관한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하여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다.

③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요지를 간략히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④5분자유발언의 발언순서는 접수부에 의한 접수순서에 의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